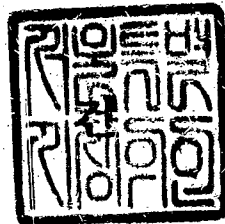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

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고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은 모자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동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입소대상, 보호기간, 입·퇴소절차 등이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및 여성복지사업안내 등 제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모자복지법, 동법시행규칙, '99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억에산장

"예고없는 대형화재 미리 미리 안전점검"

건설안전관리본부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애장동 6 - 7 / 전화 (02) 3708 - 2320 ~ 21 / 전송 (02) 3708 - 2327
처리부서 : 총무부 서무과(남산빌딩3층) / 총무부장 : 이현구 / 조사관리과장 : 조규철 / 담당 : 이상용

문서번호 총무58710- 1454
시행일자 1999. 5. 8

(경유)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법무담당관

선 결	법무담당관 박승호		지	
접 일 시 간	99. 5. 10		시 결	법제담당관 조규철
수 번 호	466		제	
처 리 과			공	
담 당 자	이현구		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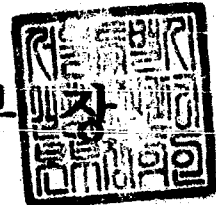
제목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 폐지 조치의뢰

1.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은 도로법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96.4.30)되었으나,

2. 이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과 그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침 정비시 수시로 동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어 건설교통부 지침을 직접적용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이를 폐지 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건설안전관리본부



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안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은 도로법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96.4.30)되었으나,

이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과 그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침 정비시 수시로 동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는것임

2.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규 :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건설교통부 지침)

제1조(목적)이 요령은 도로법(이하 “법” 이라한다)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 이라한다)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11조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열린서울 열린미래"

서울특별시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 - 7 / 전화 (02) 3708 - 2320~21 / 전송 (02) 3708 - 2327
처리부서 : 총무부 조사관리과(남산법관3층) / 총무부장 이현구 / 조사관리과장 조규철 / 담당 이상용

문서번호 총무 58710 - 1454

시행일자 1999. 5. 8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 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행정(2)부시장	전 결	김 호 대
본 부 장	조규철	
안전관리과장	김기남	법무담당관실사관
총무부장	이현구	도로운영과장 김성진
기안	조규철	협조

★◎

제목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 단속규정 폐지

000241



1.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 단속규정은 도로법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96.4.30)되었으나,

2. 이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과 그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침 정비시 수시로 동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이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을 직접적용 시행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 단속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 단속규정 폐지 조치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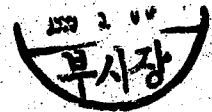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 단속규정은 도로법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96.4.30)되었으나,

2. 이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과 그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침 정비시 수시로 동규정을 정비해야 하는등 행정력 낭비 요인이 있어 건설교통부 지침을 직접적용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이를 폐지 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안

제정심사	1999. 4. 22	제 호
담당자	서울특별시교통국	법무담당관
이승복	이정환	박승룡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은 도로법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96.4.30)되었으나,

이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과 그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침 정비시 수시로 동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을 직접 적용 하도록 하는것임

2.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규 :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건설교통부 지침)

부시정

제1조(목적)이 요령은 도로법(이하 “법” 이라한다)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 이라한다)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11조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운영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운영제한차량단속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 전화 (02) 3707-9159 ~ 60 / 전송 (02) 3707-9249
 처리부서 : 여성개발담당관 (서소문제1별관5층) 과장 신연희 / 담당 박대식

문서번호 여성 65260 - 265

시행일자 1999. 5. 12

경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 결	법무담당관 박대식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1999. 5. 14	결 재	법제담당관 박대식
	번호	1343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신연희		

제 목 서울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발령의뢰

1.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과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이 입소대상, 보호기간, 입, 퇴소절차 등이 모자복지법, 동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안내 지침등 제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263호 (93.5.6)

1.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 검토(안) 1부
2.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규정안 1부 끝.

여 성 정 책 관

여성정책관

신연희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 전화 (02) 3707-9159 ~ 60 / 전송 (02) 3707-9249
 처리부서 : 여성개발담당관 (서소문제1별관5층) / 과장 신연희 / 담당 박대식

문서번호 여성 65260 - 744
 시행일자 1999. 5. 12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5년		
여성정책관	전결		
여성개발담당관	신연희	법무담당관	심사평
기안	박대식	부녀보호팀장	홍영



제 목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

1.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과 관련임.
2. 우리과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이 입소대상, 보호기간, 입, 퇴소절차 등이 '모자복지법,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안내지침 등 제규정에 의하여 가능하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 검토(안) 1부
2.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규정안 1부 끝.

(제2안)

수신 : 법무담당관
 제목 : ^{관련 의회}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 폐지
 1.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과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이 입소대상, 보호기간, 입, 퇴소절차 등이 모자복지법, 동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안내 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을 폐지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기
문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 검토(안) 1부
2.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규정안 1부 끝

여 성 정 책 관

여성정책관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제지 검토(안)

관련조항	운 영 규 정(시훈령)	모자복지법 등 관련규정
제1조(목적)	관리의료법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1조 모자복지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입소대상)	○입소대상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입소가정 -입소자가 많은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입소 -서울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제외한다	○'99년도 여성복지안내(보건복지부) -모자복지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정으로 시설입소대상자에 포함 -거주지역 제한없이 시설에 입소보호하여야 함
제3조, 제4조, 제8조 입소절차	○입소절차 -시설입소신청서에 모자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소조치(제3조)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본 2부, 호적등본 2부, 무주택입증서류, 사진 3 매, 거주지역도, 요구호자증명 ○퇴소절차(제8조) -퇴소하고자 하는 자는 퇴소에 정일 30일 전까지 퇴소신청 서를 시설장에게 제출 -입소자를 퇴소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모자복지위원회가 폐지(99.3.31)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7조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99년도 여성복지안내(보건복지부) -시설입소는 시·군·구 상담원의 상담을 거쳐 결정 -대상자가 시설입소상담을 먼저하고 구 상담원이 이를 확인하여 입소 를 결정할 수 있음 -시설퇴소는 입소자가 시설장과 상담후, 시설장은 즉시 시·군·구청장에 게 퇴소 통보 -입소 구비서류 - 호적등본, 건강검진서, 퇴소절차서, 퇴소절차서, 퇴소절차서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1조 ○제4조 및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제4조 제1항 제15호 및 제16호 ○제4조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 ○제4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제4조 제1항 제21호 및 제22호 ○제4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 ○제4조 제1항 제25호 및 제26호 ○제4조 제1항 제27호 및 제28호 ○제4조 제1항 제29호 및 제30호 ○제4조 제1항 제31호 및 제32호 ○제4조 제1항 제33호 및 제34호 ○제4조 제1항 제35호 및 제36호 ○제4조 제1항 제37호 및 제38호 ○제4조 제1항 제39호 및 제40호 ○제4조 제1항 제41호 및 제42호 ○제4조 제1항 제43호 및 제44호 ○제4조 제1항 제45호 및 제46호 ○제4조 제1항 제47호 및 제48호 ○제4조 제1항 제49호 및 제50호 ○제4조 제1항 제51호 및 제52호 ○제4조 제1항 제53호 및 제54호 ○제4조 제1항 제55호 및 제56호 ○제4조 제1항 제57호 및 제58호 ○제4조 제1항 제59호 및 제60호 ○제4조 제1항 제61호 및 제62호 ○제4조 제1항 제63호 및 제64호 ○제4조 제1항 제65호 및 제66호 ○제4조 제1항 제67호 및 제68호 ○제4조 제1항 제69호 및 제70호 ○제4조 제1항 제71호 및 제72호 ○제4조 제1항 제73호 및 제74호 ○제4조 제1항 제75호 및 제76호 ○제4조 제1항 제77호 및 제78호 ○제4조 제1항 제79호 및 제80호 ○제4조 제1항 제81호 및 제82호 ○제4조 제1항 제83호 및 제84호 ○제4조 제1항 제85호 및 제86호 ○제4조 제1항 제87호 및 제88호 ○제4조 제1항 제89호 및 제90호 ○제4조 제1항 제91호 및 제92호 ○제4조 제1항 제93호 및 제94호 ○제4조 제1항 제95호 및 제96호 ○제4조 제1항 제97호 및 제98호 ○제4조 제1항 제99호 및 제100호

작성일자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일기		요일	
근 무 차									
갑 부			을 부			병 부			
계급	성명	인	계급	성명	인	계급	성명	인	
근 무 사 항									
시 간	근 무 내 용					근무자	제보자	비고	

* 근무내용은 육하원칙에 외거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방송여부 기록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